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서 민 의 금 융 생 활 지 원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금융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를 통해,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, 서민·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아울러,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신용보증)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무”란 개인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대출·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.

제42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 중 ‘연이율 10만분의 30(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한다)’을 ‘연이율 10만분의 45’로 한다.

제42조4항 본문 중 ‘연이율 10만분의 60’을 ‘연이율 10만분의 100’으로 한다.

제42조제5항 중 ‘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(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)’을 ‘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’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에 출연의무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내야 하는 출연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곱한 금액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”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.

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”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(이하 “신용보증금액”이라 한다)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(2025년 12월 31일까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신용보증금액 등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)을 말하며, 같은 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말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10만분의 100 -----
-----.

⑤ -----

----- 별표 1의 출연금 요율 -----
----- 을 곱한 금액 -----

-----.

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= A - (B 및 C 중 적은 금액)

A: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× 별표 1의 출연금 요율

B: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× (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비율 - 10만분의 30)

C: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 × 1천분의 5

⑥ ~ ⑨ (생략)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14